

7. 經濟行政規制緩和 細部推進計劃(案)

資料提供 : 建設部

■ 공업입지

규제명	공장용지 취득절차 개선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 제21조의 7(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 산림법 제111조 (임야의 매매)◦ 농지개혁법 제19조(농지매매증명)◦ 농지임대차보호법 제19조(농지매매의 확인)
규제내용 또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입지 지정을 위하여 농지·임야등의 토지를 취득코자 할때에는 토지거래허가(신고) 및 농지·임야매매증명을 발급 받은 후 매매계약 체결 가능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부 토지국 토지정책과, 농림수산부, 산림청◦ 토지거래허가(신고)와 농지·임야매매증명은 각각 별개의 절차에 따라 규제됨.
규제의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입지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취득이 필요하나 실수요자 확인을 위하여 개별입지 지정후에야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고, 농지·임야매매증명도 별개로 받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보상가격이 증가함.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입지 지정을 받기 위한 토지취득은 개별입지 지정승인전이라도 당해 토지의 거래허가를 하고◦ 이때 농지 및 임야매매증명은 생략하도록 조치함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입지개발지침 개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 '93. 3~'93. 8- 업무개선에 관한 지침등 시달 : '93. 9

규제명	공단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절차 개선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공업단지의 지정) ◦ "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 " 제21조(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규제내용 또는 목적	◦ 공업단지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건설부 토지국 입지계획과 ◦ 절차 : - 공단지정 : 지정안작성 → 관계부처협의 → 심의회심의 → 지정고시 - 실시계획 : 실시계획작성 → 관계부처협의 → 실시계획승인고시
규제의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시 각각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여 유사 내용에 대한 중복협의 및 처리기간의 지연을 초래 ◦ 관련 인허가사항의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개별설명요구, 첨부서류 과다, 협의회신 지연, 별도 개별절차 이행요구 등으로 민원인의 부담가중 및 처리기간 과다소요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단계별 협의기준을 정하여 중복협의를 방지하도록 하고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에 대한 협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면 관계부처 협의없이 실시계획을 승인도록 함.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 '93. 3 - '93. 8 - 업무개선에 관한 지침등 시달 : '93. 9

규제명	공업단지 지정시에 국토이용계획 및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외제처리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외제) ◦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국토이용계획의 결정) ◦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2(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규제내용 또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단지 지정 후에 공단개발을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17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가 외제처리도록 되어 있으나 ◦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국토이용에 관한 기본방침 변경이라는 점에서 공유수면의 경우는 육지가 아닌 해면이라는 면에서 공업단지 지정전에

	별도로 변경 또는 수립절차를 거침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건설부 토지국 입지계획과(실시계획승인) 국토계획국 토지이용계획과(국토이용계획변경) 수자원국 수자원정책과(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 절차 :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장관, 도지사) → 의견 청취 → 중앙부처 협의 → 국토이용계획 심의 → 결정고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기초조사 → 입안 → 중앙부처 협의(시 · 도 의견 청취) → 수립 · 변경
규제의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부담 및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단지 지정시에 위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외제처리 ◦ 이유 : 공업단지 지정시에는 미리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한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공단조성을 위한 매립은 공유수면 매립목적에 적합하므로 별도 절차 불필요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 개정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 '93. 3 ~ '93. 8 - 관계법령 개정 : 정기국회 상정

규제명	공업단지 개발절차의 개선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공업단지의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기본계획의 수립)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시행자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9조(실시계획의 승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토지수용) <p>→ 실시계획승인 시점을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시점으로 갈음</p>
규제내용 또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내용 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 후 토지수용이 가능토록 규정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주체 : 건설부 - 절차 : 기초조사 → 공업단지지정 → 기본계획수립 → 시행자지정 → 실시계획승인 → 사업준공 토지수용 → 용지매수 → 개발사업 시행
규제의 부작용	공업 단지는 기초조사실시 → 공업 단지 지정 → 기본계획 수립 → 시행자지정

	→ 실시계획승인의 단계를 거쳐 개발에 착수하며, 실시계획승인 후 토지 수용이 가능하므로 급격한 지가상승이 발생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단지 개발절차를 개선하여 토지수용 가능시점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조사→공업단지 지정→시행자지정→ 개발계획승인→실시계획승인→사업준공 토지수용→용지매수 - 기본계획수립 단계를 폐지하고 공업단지 지정시에 기본계획에서 필요 한 사항을 동시에 검토처리하고 사업시행자도 공업단지 지정시에 함께 지정 - 토지수용권 발동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사업시행 구역과 보상물건 및 사업기간등 토지수용권 발동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한 개발계획수립을 제도화하여 실시계획승인 전이라도 용지매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추 진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 '93. 3~'93. 8 - 관계법령 개정 : 정기국회 상정

규 제 명	공장용지 분양가격 산정의 합리화
근 거 규 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규 제 내 용 또는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용지의 분양가격은 수도권에서는 감정가격으로, 그외의 지역에 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금액으로 하고 있음. · 공장용지의 분양가격은 공사비, 조사비, 보상비 및 기타비용을 합산 한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조성원가 10%이내)을 합한 금액 분양하고 있는데 직접비, 간접비, 자본비용은 항목구성의 일부중복으로 분양 가 상승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주체 : 건설부 토지국 입지계획과 - 절차 :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
규제 외부작용	- 분양가격의 상승효과로 입주기업의 경영악화 요인이 됨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원가 계산을 실비기준으로 산정 - 적정이윤도 대폭인하

추 진 일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 '93. 3~'93. 8 ◦ 관계법령 개정 : '93. 9
---------	---

■ 토지이용 및 거래

규 제 명	경지지역 및 산림보전지역내 행위제한
근 거 규 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규 제 내 용 또 는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토의 77.4%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지지역 또는 산림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 경지지역 및 산림보전지역 안에서는 열거된 토지 이용행위만 허용됨 (Positive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행위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 · 농·임·수산물 가공공장(3천m² 미만) 및 축산물 가공 공장(1만m² 미만) · 대지·공장용지·잡종지인 토지에 무공해 공장 건설 - 주택 : · 농어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주변지역의 사원임대주택 및 기숙사(3만m² 미만) ◦ 그 결과 가용토지의 공급이 제한됨 ◦ 가용토지면적 전국토의 4.4%(일본 : 7%, 대만 : 5.9%)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시장·군수 ◦ 절차 : 농지관련법, 산림법, 건축법 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시 국토 이용관리법에서 허용한 행위만 허가
규제의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용지, 택지 및 공공용지의 확보가 어려워 산업시설 및 주거 안정에 제약 ◦ 가용토지의 수급불균형으로 지가상승 및 토지투기 유발 ◦ 2001년까지 필요한 토지수요 1,291km²의 공급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역개편을 위한 국토이용관리법개정 추진중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중인 국토이용관리법은 금년중에 개정하여 94년 이후 시행 ◦ 단기대책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경지지역과 준보전임지인 산림보전지역에서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규제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지의 총면적이 3만m² 미만인 주택지,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 기타 시설의 설치는 용도지역변경없이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사업시행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및 산림훼손허가의 절차가 지

	<p>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하여 원활한 토지이용에 제약이 되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이 요망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가 과다하고 작성에는 전문인력이 필요 --허가기준이 모호 --지자체에 대한 위임범위가 협소
추 진 일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93. 3. : 개정(안) 작성 -'93. 4 ~ 5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93. 6. : 국무회의의결 및 공포

규 제 명	용도지역축소 및 행위제한방식 전환																					
근 거 규 정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내지 제9조, 제15조, 제27조.																					
규 제 내 용 또는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토지의 현황을 기초로 하여 10개의 용도 지역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토의 84.4% : 보전용도지역, 15.6% : 개발용도지역 ◦ 용도지역별로 지정목적에 따라 토지이용행위를 규제 ◦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개발용도지역으로 변경 																					
규제주체 및 절차	<p>(용도지역의 행위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시장 · 군수 ◦ 내용 : 농지관련법, 산림법, 건축법 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시 국토이용 관리법에서 허용한 행위만 허가 (용도지역 변경) ◦ 주체 : 국토계획국 토지이용계획과, 도지사 ◦ 절차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입 안</td> <td style="padding: 2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관계부처협의</td> <td style="padding: 2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국토이용계획 심의회 심의</td> <td style="padding: 2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결정 · 고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도지사</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도지사</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건설부장관</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도지사</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건설부장관 (30만m²이상)</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건설부장관 (30만m²이상)</td> <td></td> <td></td> </tr> </table> 	입 안	→	관계부처협의	→	국토이용계획 심의회 심의	→	결정 · 고시	도지사		· 도지사		· 건설부장관		· 도지사			· 건설부장관 (30만m ² 이상)		· 건설부장관 (30만m ² 이상)		
입 안	→	관계부처협의	→	국토이용계획 심의회 심의	→	결정 · 고시																
도지사		· 도지사		· 건설부장관		· 도지사																
		· 건설부장관 (30만m ² 이상)		· 건설부장관 (30만m ² 이상)																		
규제의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국토이용계획 제도는 지나치게 보전위주로 되어 있어 가용토지의 부족과 토지의 원활한 공급에 장애를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목적의 용도지역도 도시지역의 78%가 녹지, 개발촉진지역의 85.7%가 개간촉진지구로서 개발용도의 토지공급에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지역 및 산림보전지역의 행위제한이 규제위주의 Positive System으로 되어 있어 토지이용에 제약 - 경제발전에 필요한 택지·공장용지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등 보전지역을 도시지역, 개발촉진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3월~2년)만큼 토지공급이 지체되고, 서류 및 도면작성등에 비용이 들어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보전위주의 국토이용계획제도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수의 축소조정 및 가용토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10개의 용도지역을 4개로 통폐합하고 개발목적의 용도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원활한 토지이용 도모 - 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과 산림보전지역중 준보전임지는 순수한 보전목적이 아니므로 준보전지역으로 설정하여 개발용도로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지역 농업진흥지역이 아닌지역 : 약 15,000km²(전국토의 15%) 산림보전지역중 준보전임지 : 약 16,000km²(전국토의 16%) - 중복규제의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임지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제하지 않고 각각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산림법에 일임하여 중복규제를 해소 - 중복절차의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공단, 지방공단,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시에는 각 개별법에 의한 지정절차로 국토이용계획변경까지 의제하여 중복절차의 해소 - 행위제한방식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중 준보전임지의 행위규제를 허용행위열거방식에는 제한행위열거방식으로 전환하여 토지이용 범위를 확대함.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3~4 : 법 개정(안) 작성 및 관계부처협의 - '93. 5~6 : 입법예고 및 공청회 - '93. 7~8 : 경제장관회의 및 법제처심사 - '93. 9 : 국무회의의결 및 국회제출

규제명	토지거래허가(신고)제 개선
근거규정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15
규제내용 또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가상승이나 토기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은 허가·신고구역으로 지정하며 거래가격, 이용목적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소유권의 이전등이 가능. ○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계약은 무효이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제 : 허가신청→심사→허가 또는 불허가 - 신고제 : 신고접수→심사→신고수리 또는 권고
규제의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사전심사로 필요한 토지취득이 곤란한 사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임야매매증명과 토지거래허가·신고제에 의한 중복규제 - 투기대상이 어려운 토지까지 거래규제 ○ 허가받은 토지가 목적으로 이용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허술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심사제 폐지등 심사기준은 완화하되 취득한 토지는 철저히 관리하여 실수요자의 토지취득을 쉽게하고 토지이용을 촉진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임야매매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 ○ 농업진흥지역과 같이 투기대상이 어려운 토지는 허가대상에서 제외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 '93. 4~5 - 정기국회 상정

규제명	부동산 중개법인의 경업금지
근거규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법인에 대한 허가기준)
규제내용 또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허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5,000만원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 임원의 반수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허가관청(시·군·구청장) ○ 절차 : 법인이 중개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허가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규제의 부작용	중개법인은 중개업만을 영위하여야 하므로 중개업에 부수되는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경쟁력 제고에 장애요인이 됨
개선방안	중개법인은 중개업에 부수하는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상담, 중개업 경영기법 또는 경영정보 제공등의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함(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신설)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93. 9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93. 2 : 경제장관회의 심의 -'93. 3 : 국무회의 심의 -'93. 4 : 국회제출

규제명	◦ 중개업자의 업무실적 보고의무
근거규정	◦ 부동산중개업법 제25조(업무실적보고)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중개업자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을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허가관청(시·군·구청장) ◦ 절차 : 중개업자는 매년 1월 말까지 업무처리실적을 허가관청에 보고
규제의 부작용	◦ 중개업자의 업무실적보고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보고의 실효성이 없음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실적 보고제도 폐지 ◦ 이유 : 중개업자의 불필요한 부담경감 및 행정관청의 능률적인 업무집행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92. 9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93. 2 : 경제장관회의 심의 -'93. 3 : 국무회의 심의 -'93. 4 : 국회제출

규제명	토개공의 토지비축기능수행에 토지거래허가·신고면제
근거규정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9,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0조
규제내용 또는 목적	규제구역 또는 거래계약신고구역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주체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절차 : 허가제 : 허가신청→심사→허가 또는 불허가 신고제 : 신고접수→심사→신고수리 또는 권고
규제의 부작용	토개공이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비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 신고를 받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비축기능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을 주고 있음.
개선방안	토개공의 비축토지매입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 및 거래예약신고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추진일정	<p>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이용관리법('93. 정기국회 상정) 개정후 추진

■ 건축

규제명	공장건축물에 대한 동별 준공규제
규제근거	건축법 제18조(건축물의 사용검사)
규제내용 또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공장건축물을 장기에 걸쳐 건설하는 경우에도 전체 건축물이 완공되어야만 사용검사 신청가능(다만, 가사용 승인은 가능함).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별준공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특별히 허용하고 있음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건설부 도시국 건축계획과 ◦ 절차 : 사용검사시 확인(시장 · 군수 · 구청장)
규제의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개동의 공장을 건축할 경우 동별 사용검사가 불가능 하므로 수개동의 공장중 이미 완공된 한개동 공장을 이용하여 은행대출등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어 자금압박 초래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공자원부가 추진중인 기업경영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에 반영 ◦ 공장건축물에 대하여 동별사용검사 제도도입
추진일정	상공자원부와 협의하여 추진('93. 4월 입법완료 예정)

규제명	건축물에 대한 지하층의무 설치규제
규제근거	건축법시행령 제62조(지하층의 설치)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20만이상의 시지역과 건설부장이 지정 · 공고하는 행정구역에서

또는 목적	지상층의 바닥면적 330㎡(수도권은 200㎡) 이상 건축물은 일정면적의 지하층을 설치 -유사시 대피호로 사용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건설부 도시국 건축계획과 ◦ 절차 : 건축허가 → 사용검사시 확인(시장 · 군수 · 구청장)
규제의 부작용	◦ 공장 및 주택은 지하층의 설치를 의무화 함으로서 기업주 또는 주택분양자의 부담을 가중
개선방안	◦ 건축법시행령 개정 -공장 및 주택은 지하층설치의무 면제
추진일정	◦ '93. 6 : 안작성 ◦ '93. 7 ~ 9 :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조회 ◦ '93. 10 ~ 11 : 법제처 심사 및 공포

규제명	소규모 공장의 허가절차 번잡
규제근거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제9조(건축신고)
규제내용 또는 목적	◦ 공장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에서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함 -소형주택등 일부 소규모건축물은 신고로서 건축허가에 같음하고 있음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건설부 도시국 건축계획과 ◦ 절차 :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시장 · 군수 · 구청장)
규제의 부작용	◦ 소규모공장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득하게 하므로써 축사 · 창고등 농어업용 건축물의 신고제도와 형평이 맞지 않고 설계비 부담과 기간소요 등 기업체의 부담가중
개선방안	◦ 일정구역에서 소규모공장(2층이하, 500㎡이하)은 신고대상에 포함 일정구역 예) 도시계획구역중 공업지역, 도시계획이외구역중 공업지역 및 공업용지구
추진일정	◦ 건축법시행령 개정 ◦ '93. 6 : 안작성 ◦ '93. 7 ~ 9 :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조회 ◦ '93. 10 ~ 11 : 법제처 심사 및 공포

규제명	건축허가시 관계부서 협의 절차 번잡
-----	---------------------

규제근거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규제내용 또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토지형질변경등 관계법령에 의한 14종의 인허가를 건축허가시 외제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부서에서 허가권자 산하의 관련부서에 문서로 협의하여 일정기간에 회신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 인허가 담당부서가 다른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문서로 협의하여 15일 이내에 회신토록 하고 있음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건설부 도시국 건축계획과 ○ 절차 : 건축허가(시장·군수·구청장)
규제의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시 타부서와 문서로 협의처리 하므로 인하여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민원인이 해당부서를 방문하게 됨으로 인해 불편 및 부조리 야기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침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와 관련된 부서의 담당 직원을 건축종합민원실에 고정배치하여 관련부서와 문서협의 하지 않고 직접 검토처리 (제2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서(기관의 대표포함) 담당자가 일정장소에 정례적으로 회동하여 합동심의후 허가처리 ※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토록 함.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 훈령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5 : 안작성 - '93. 6 : 관계부처 의견조회(총리실 및 총무처 포함) - '93. 7 : 훈령시달

규제명	용도변경시 도서제출 과다 관행
규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등의 신청)
규제내용 또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변경 신청시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총의 설계도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시·군에서는 용도변경이외 부분에 무단용도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건축물의 설계도서 제출토록 관행으로 운영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건설부 도시국 건축계획과 ◦ 절차 : 건축허가 신청시 확인(시장·군수·구청장)
규제의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한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서 민원인의 부담 가중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변경시에는 변경하는 층에 대한 설계도서만을 제출토록 함 ※ 단순한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건축사에 의한 작성의 무를 폐지토록 차기 건축법시행령 개정시 반영
추진일정	'93. 3 : 지침시달

규제명	건축허가관련 임의규제 남용
규제근거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규제내용 또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법령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사유로 자체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허가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시키는 사례가 다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례(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건축주와 대지주가 다른 경우 건축허가 불허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건설부 도시국 건축계획과(시·군·구) ◦ 절차 : 건축허가→사용검사시 확인(시장·군수·구청장)
규제의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령에 없거나 배치되는 건축허가 기준을 허가청별로 임의운영하고 있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여부를 예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업무처리상 재량의 소지가 있고, 이로인한 민원내지 부조리 요소가 있음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규에 근거가 없는 허가처리 지침은 일제 폐지
추진일정	'93. 4 : 지침시달

규제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소매점의 면적과다 제한(상공부 요청사항)
규제근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건축물의 용도분류)
규제내용 또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슈퍼마켓등 소매점의 면적은 500m² 미만으로 제한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건설부 도시국 건축계획과 ◦ 절차 : 건축허가 → 사용검사시 확인(시장 · 군수 · 구청장)
규제의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근대화로 점포가 점차 대형화되는 경향이나 과다한 면적제한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점포의 입지가 어렵고 영세화를 초래 ◦ 주위에 환경영향이 적고, 구조상 문제등이 없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화되어 있는 주민생활을 규제함으로서 위법행위 유발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중 소매점의 면적기준을 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위임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6 : 안작성 ◦ '93. 7~9 :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조회 ◦ '93. 10~11 : 법제처 심사 및 공포

규제명	총포판매소의 용도분류 규제
규제근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용도분류)
규제내용 또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포판매소는 건축법령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동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공업지역등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허용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건설부 도시국 건축계획과 ◦ 절차 : 건축허가시 확인(시장 · 군수 · 구청장)
규제의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포판매소는 단순히 총기 · 도검 · 분사기 · 전자총격기를 판매하는 업소로서 인화물질이나 독극물을 판매하는 업소가 아님에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하고, 공업지역등에만 허용하여 일반주거지역 등에 업소개설의 불가로 민원야기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포판매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등에 허용하고 있음)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6 : 안작성 ◦ '93. 7~9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 '93. 10~11 : 법제처 심사 및 공포

규제명	관광호텔의 입지가능지역에 위탁시설 설치규제(교통부요구사항)
-----	----------------------------------

규제근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4”(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 관광호텔의 허용여부를 건축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호텔내에 위락시설은 설치불가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건설부 도시국 건축계획과 ◦ 절차 : 건축허가시 확인(시장·군수·구청장)
규제의부작용	◦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관광호텔은 조례에서 허용하도록 하였으나, 관광진흥법령에서 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위락시설은 설치를 금지하여 외래관광객의 유치에 차질이 있음.
개선방안	◦ 건축법시행령 개정 —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건축조례로 허용하는 관광호텔에 관광진흥법령에서 허용하는 위락시설을 포함
추진일정	◦ 건축법시행령 개정 ◦ '93. 6 : 안작성 ◦ '93. 7~9 : 입법계고 및 관계부처 협의 ◦ '93. 10~11 : 법제처 심사 및 공포

■ 건설산업

규제명	건설업면허 규제주기에 의한 건설업 신규참여 제한
근거규정	건설업법 제6조(건설업의 면허등)
규제내용 또는 목적	◦ 건설업면허는 3년마다 1회 실시하도록되어 있음. 다만, 건설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도 실시할 수 있음. ◦ 이는 수시 실시로 인한 건설업체의 과당경쟁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규제주체 및 절차	◦ 규제주체 : 건설경제국 건설경제과 ◦ 절차 : — 건설부장관(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매 3년마다 건설업 신규면허 실시계획을 공고한 후 건설업면허 신청을 받아 심사후 처분
규제의부작용	◦ 건설업면허 신청의 일시집중을 초래하여 건설기술자 스카웃 현상과 장비수요의 급증등으로 수급상 혼란 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한 업체의 건설업 참여가 장기간 제한되어 면허의 이권화 초래 및 건설업발전 저해 <p style="text-align: center;">※ UR협상 과정에서 외국으로부터 면허주기 폐지 요구</p>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면허는 매년 1회 또는 수시로 실시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경쟁을 통한 기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 -가격 및 품질·서비스 향상 촉진
추 진 일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국회 상정 : '93. 9 -개정공포 : '93. 12

규 제 명	건설업자에 대한 도급한도제
근 거 규 정	건설업법 제17조(건설공사 도급의 제한)
규 제 내 용 또 는 목 적	건설업자는 건설부장관이 자본금 및 공사 실적등을 감안하여 정한 업체 별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없음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주체 : 건설부 건설경제국 건설경제과
규 제 의 부 작 용	현행 도급한도액제도만으로는 건설업자의 경쟁력제고 곤란
개 선 방 안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Q) 적용공사에 대하여는 도급한도액 적용제외
추 진 일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국회 상정 : '93. 9 -개정공포 : '93. 12

규 제 명	해외공사 도급허가
근 거 규 정	해외건설촉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 제 내 용 또 는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공사를 도급받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해외공사의 수주질서를 확립하고 수익성공사 선별수주 유도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주체 : 건설부 건설경제국 해외건설과 해외건설협회 업무부(권한 위탁범위내) ◦ 절 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공사 도급허가 신청을 하면 도급허가 기관은

	당해국가의 시장여건 발주자의 신뢰도, 당해공사의 수익성 기타 도급허가 신청자의 시공능력등을 검토하여 도급허가
규제의부작용	기업활동의 자율성 및 신속한 수주활동 저해
개선방안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도급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부담과 시간적 손실을 극소화, 신속한 수주활동에 기여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3 Task Force 구성(건설부, 해건협, 학계, 업체전문가로 구성) ◦ '93. 6 개선방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 ◦ '93. 9 개선방안 확정 ◦ 해외건설촉진법 개정 : '94이후

규제명	해외건설업 면허
근거규정	해외건설촉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 2
규제내용 또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종류별로 일정한 면허기준을 충족시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해야 함. ◦ 해외건설시장의 전망과 수주현황등을 감안 면허수와 시기 제한 ◦ 무분별한 해외건설 진출로 인한 부실공사, 국제신뢰도의 손상을 방지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주체 : 건설부 건설경제국 해외협력과 ◦ 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부장관이 해외건설시장 전망과 수주현황등을 감안하여 면허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보에 신청 공고하고 업체의 신청을 받아 기본금 및 기술능력을 심사하여 면허 처분
규제의부작용	해외건설 진출의욕은 있으나 기본금 및 기술능력이 영세한 중소전문업체의 해외진출 제한
개선방안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영세 전문업자에도 진출기회 부여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3 Task Force 구성(건설부, 해건협, 학계, 업체전문가로 구성) ◦ '93. 6 개선방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 ◦ '93. 9 개선방안 확정 ◦ 해외건설촉진법 : '94이후

규제명	해외건설업도급한도액 제도
-----	---------------

근 거 규 정	해외건설촉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 제 내 용 또 는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공사의 한도액 및 총 도급한도액을 정함.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주체 : 건설부 건설경제국 해외협력과 ◦ 절 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공사 도급한도액을 최근 2년간 해외공사 실적중 큰 것의 2배와 자본금+준비금의 3배중 큰 것으로 하며, 총 도급한도액은 1건공사 한도액의 2배로 정함.
규 제 의 부 작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건설실적 저조로 거의 모든업자가 자본금과 준비금에 의하여 책정됨으로써 실질적인 공사 수행능력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의한 진출 저해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한도액제도 폐지 ◦ 다만, 신규 면허업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국내 시공경험이 있는 공사를 수주토록 유도하는 장치 마련
추 진 일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3 Task Force 구성(건설부, 해건협, 학계, 업체전문가로 구성) ◦ '93. 6 개선방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 ◦ '93. 9 개선방안 확정 ◦ 해외건설촉진법 개정 : '94이후

■ 주 택

규 제 명	주택분양가 규제
규 제 근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건설부 지침)
규 제 내 용 또 는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 20호이상 주택을 건설하여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시행지침」에 의하여 분양가를 제한 ※ 분양가=택지비+건축비(건축비는 정부가 고시)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주체 : 건설부(주택국 주택정책과) 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자(시장·군수) ◦ 절차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시 주택의 분양가가 원가연동제시행지침에 적합한지를 심의하여 승인
규 제 의 부 작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가규제는 장기적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의 공급을 오히려 위축시키고 -부실시공등 주택의 질적 수준 저하를 초래하며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수급상황, 택지여건, 분양가와 시가의 차이정도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여건이 성숙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화 발표시 주택가격이 상승할 우려 -분양가 상승시 수요가 감소하여 결국 공급감소를 초래 -호화·사치성 주택건설로 국민경제에 악영향 ※ 기존질서의 변경에 따른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가입자등의 반발, 서민주택재원의 감소 -공영개발택지의 처리문제와 일반경제에 미칠 영향등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청회 개최 : '93. 3(국회주관) ◦추진방안 마련 : '93. 6

규제명	불량주택 재개발
규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개발법, 동법시행령
규제내용 또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내의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계획적으로 재개발함으로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며,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및 주민동의비율등 사업요건을 규정하여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함.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주체 : 건설부(주택국 주택개발과) 시·도지사 ◦절차 : 지구지정(건설부장관)→사업계획결정(시·도지사)→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구청장)→관리처분계획인가(시·군·구)→분양처분·준공(시·군·구)
규제의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개발사업은 기존의 도시지역을 재편성하는 것이므로 입지, 기반시설 수용능력, 고도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경관심의·건축심의·임지심의 등 각종 심의절차가 번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차간소화 :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하고 인·허가신청의 기간을 정하

	<p>며, 각종 심사등의 절대처리시한을 규정 ※ 특히 서울시의 절차간소화를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수립 : 무계획적인 재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전면적으로 재개발 ◦ 공영개발확대 : 민간에 의한 재개발은 사업추진능력이 미진하여 시행 착오가 많고 개발이 자연되므로 향후 공영개발을 확대하여 신속히 추진
추 진 일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개발업무지침 시달 : '93. 6 ◦ 도시재개발법 개정 ◦ 개정안 작성 : '93. 9 ◦ 입법예고 : '93. 10 ◦ 국무회의 및 국회상정 : '94년 초 ◦ 공포 · 시행 : '94년 초

규 제 명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이용규제
규 제 근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규 제 내 용 또 는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유치원부지로 계획된 부지는 타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하므로서 유아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주체 : 건설부(주택국 택지개발과) 택지개발계획 승인권자(건설부장관, 시·도지사) ◦ 절차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건설부장관)→개발계획승인→실시계획승인→공급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택지개발계획상의 용도에 따라 건축)
규 제 의 부 작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유치원부지에는 동용도로만 건축케 하므로서 토지이용도가 저하되고 독서실, 강습소등 유아교육에 지장이 없는 시설의 겸용을 요구하는 민원빈발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부지는 토지이용도의 제고를 위하여 주용도를 유치원으로 사용토록 하고 일정규모의 독서실, 예체능계강습소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추 진 일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 ◦ 개정안 작성 : '93. 5 ◦ 입법예고 : '9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회의 및 국회상정 : '93. 11 ◦ 공포 · 시행 : '93. 11
--	--

규 제 명	근로자주택 입주자격 제한
규 제 근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
규 제 내 용 또 는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주택입주대상 자격을 제조업종사 근로자, 운수직 및 청소직 근로자로 제한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주체 : 건설부(주택국 주택기금과) ◦ 절 차 :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에 의거 각 공급주체가 근로자주택 입주자모집공고시 입주대상을 제한
규 제 의 부 작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대상업종과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불만고조 ◦ 주택의 실수요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세대주 및 세대주가 아닌 기혼여성 근로자의 입주자격 배제로 실제로 주택구입이 어려운 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함.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주택의 입주대상을 제조업과 운수직은 운송업으로, 청소직은 위생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주가 아닌 기혼여성 근로자에게 입주자격 부여
추 진 일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 개정 ◦ 개정안 작성 : '93. 3 ◦ 확정 · 시행 : '93. 3

규 제 명	합동개발택지 대금납입
규 제 근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내부규정 또는 관행
규 제 내 용 또 는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개발택지의 선수공급시 토지대금을 수납함에 있어 지장물질거지 연동 사실상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시점임에도 잔금완납을 강요하거나 불이행시 연체로 정수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주체 : 건설부(주택국 택지개발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지자체, 주공, 토개공) ◦ 절 차 : 택지 선수공급승인→합동개발 선수협약체결→선수금, 중도금, 잔금지불(주택사업자)

	※ 택지의 사용시기가 지연되어도 잔금 미지불시에는 연체 료 부과(택지개발사업시행자)
규제의부작용	◦ 실제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택지에 대하여 잔금완납을 강요하거나 납부지연시 연체료를 징구하므로서 업체의 자금 압박가중 및 민원빈발
개선방안	◦ 실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한 시점에 잔금을 납부도록 조치
추진일정	◦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내부규정 개정지시 : '93. 4

규제명	공동주택단지내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
규제근거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규제내용 또는 목적	◦ 공동주택단지내 설치된 복리시설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생활편의침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규제주체 및 절차	◦ 규제주체 : 건설부(주택국 주택관리과) 시·도지사 ◦ 절차 : 용도변경 하고자하는 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후 시·도지사에게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 도서와 비교 검토후 용도변경 허가
규제의부작용	◦ 용도변경시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많은 민원 제기(특히 임대교회)
개선방안	◦ 입주자 편의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는 현행대로 되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신고로 변경 ※ 복리시설은 지정용도에 따라 분양가(낙찰가) 차이가 있어 용도변경에 따라 불로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가로 분양받은 자의 민원의 제기가 우려되므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에서 설치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유치원·의료시설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용도변경 제한
추진일정	◦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 개정안 작성 : '93. 6 ◦ 입법예고 : '93. 7 ◦ 국무회의 및 국회상정 : '93. 9 ◦ 공포·시행 : '94. 1

규제명	◦ 공동주택의 자치관리 신고제 폐지
규제근거	◦ 공동주택관리령 제14조
규제내용 또는 목적	◦ 규제내용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를 폐지 하고자 할 때 결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

	토록 함.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주체 : 시장·군수(주택국 주택관리과) ◦ 규제절차 : 입주자 과반수 및 입주자대표회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자치관리폐지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
규제의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공동주택에 대한 자치관리폐지 신고와 주택관리업자의 업무개시 신고가 중복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민원 발생 - 행정업무의 과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효과 : 이중신고로 인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화 및 입주민 불편사항 해소 ◦ 업무개시 신고사항을 보완하여 자치관리 폐지신고 규정을 삭제하므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민 불편사항 해소 - 행정절차의 간소화 도모
규제완화시 예상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문제점 없음
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여 자치관리 폐지 신고규정 삭제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 작성 : '93. 6 ◦ 개정안 확정 및 시행 : '93. 12

■ G.B 행위제한

규제명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규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9조 ◦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건설부 훈령)
규제내용 또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안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등을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임. ◦ 따라서 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 분할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해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공익시설, 도심기피시설, 농림수산시설, 생활환경개선 시설 등 - 구역지정목적에 지장 없는 토지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행위등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시장 · 군수 ◦ 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 : (신청인) → 읍 · 면 · 동(경유) → 시장 · 군수(허가) (도시사승인) ; 시장 · 군수(승인신청) → 도지사(승인) → 허가(시장 · 군수) (건설부승인) : 시장 · 군수(승인신청) → 도지사(경유) → 사전결재(국무총리) → 국무회의 심의(건설부) → 승인(건설부) → 도지사(경유) → 허가(시장 · 군수)
규제의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중 · 개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구역주민의 생업 및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민원제기 ◦ 엄격한 토지이용제한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불가 및 민원 비등
개선방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이용 실태를 정확히 조사한 후 구역지정 목적범위내에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
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개정 ◦ '93. 5 : 토지이용실태 조사 ◦ '93. 9 : 규정 개정

■ 수도권 정비

규제명	대형건축물에 대한 규제방법 개선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제10조 ◦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5조
규제내용 또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및 판매시설은 인구유발계수가 높아 수도권의 주요 인구 집중 요인으로 작용 ※ 인구유발계수(1,000㎡당 취업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1, 판매시설 145, 업무시설 94, 교육 25 등 - 특히 대형빌딩은 대부분 대기업의 본사가 입주하게 되어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 ◦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안에서 대형업무 및 판매시설의 신 · 증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발전상 부득이한 경우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설 : 25,000㎡ ~ 9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시설 : 15,000m² ~ 40,000m² · 복합시설 : 25,000m² ~ 90,000m²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국토계획국 수도권계획과 ◦ 절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허용
규제의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내에 고층 대형 건물을 규제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국제도시로서의 기능을 약화 ◦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펼지를 나누어 소규모로 여러개 등을 건축하는 사례가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규제를 폐지하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여 경제적 규제 방식으로 전환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93. 5 : 개정안 작성 -'93. 6 ~ 7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93. 8 :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93. 9 : 국회제출

규제명	경기동·북부지역 개발사업 규제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3조 ◦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규제내용 또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수계보호 및 국방상의 이유로 택지조성사업, 관광위락시설 설치 사업등의 개발사업을 규제 ◦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일정규모까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조성사업 : 자연보전권역은 6만m²까지, 개발유보권역은 15만m² 까지 허용 - 관광위락시설 설치사업 : 양 권역 공히 6만m²까지 허용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국토계획국 수도권계획과 ◦ 절차 : 시장·군수는 택지조성사업, 관광위락시설 설치사업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국민경제상 필요한 경우는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용
규제의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의 정체 <p style="text-align: center;">※ 최근 5년간 ('85~'90) 연평균 인구증가율 (%)</p>

	<table border="1"> <thead> <tr> <th>전 국 (군지역)</th><th>수도권</th><th>자연보전권역</th><th>개발유보권역</th></tr> </thead> <tbody> <tr> <td>1.5 (-4.5)</td><td>3.3</td><td>1.0</td><td>0.1</td></tr> </tbody> </table>	전 국 (군지역)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	1.5 (-4.5)	3.3	1.0	0.1
전 국 (군지역)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						
1.5 (-4.5)	3.3	1.0	0.1						
○ 권역지정후의 여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보전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지정('90. 7)되어 이외 지역의 규제 재검토 필요 - 개발유보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상 이유로 개발을 유보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나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등으로 지역개발 필요성 증대 · 권역의 6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되고 있어 중복규제 								
○ 수도권내 택지·관광지 수요충족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까지 390만명이 증가하여 분당규모 신도시 10개 추가 소요 예상되어 수도권 변두리지역에 중소규모 택지개발 불가피 ※ 2001년에는 관광수요도 현재의 1.7배에 이를 전망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동·북부지역의 택지조성, 관광위락시설 설치사업 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대책 15만m²까지 상향조정(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 장기대책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폐지 검토(환경 및 군사 관련법률에 의하도록 하여 중복규제 해소) 								
추 진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4 : 개정안 작성 - '93. 5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 6 :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 '93. 6 : 공포 								

규 제 명	수도권 변두리지역의 공장 허용범위 확대
근 거 규 정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8조
규 제 내 용 또 는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변두리지역의 경우 계획공단안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허용되나 자유입지는 일부 업종외에 설립이 규제됨 ○ 권역별 자유입지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유보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성업종(26개)과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도시형업종(190개) 공

	<p>장에 한하여 건축연면적 1,000㎡이내의 신설 가능</p> <p>- 자연보전권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성업종(26개)과 도시형증 첨단업종(25개) 공장에 한하여 건축연면적 1,000㎡이내의 신설 가능 <p>- 개발유보권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성업종(26개)과 도시형업종(190개) 공장에 한하여 건축연면적 1,000㎡이내의 신설 가능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국토계획국 수도권계획과 ◦ 절차 : 개별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시 시장·군수가 관련법규 저촉여부 검토
규제의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유보권역에서는 도시형공장의 자유입지가 허용되나, 개발유도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은 도시형공장의 자유입지가 제한되어 권역별 규제의 형평문제 야기 <p>- 개발유도권역에는 공단을 조성하여 공장을 수용하고 자유입지는 타권역에서 이전하는 도시형업종공장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으나 지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등의 사유로 공단개발이 부진한 상태로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당초의 권역지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억제하는 결과를 빚고 있음.</p> <p>※ 14개 계획공단 370만평중 4개지구 70만평(19%) 개발</p>
규제의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보전권역은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과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지정으로 수질오염행위를 강력 규제함에 따라 공장설치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민원야기 · 자연보전권역 중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은 52%에 해당되며 여타지역(48%)까지 수질오염을 이유로 공해성이 적은 도시형공장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허용범위 확대 <p>- 개발유도권역·자연보전권역내 도시형공장의 자유입지 허용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p>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4 : 개정안 작성 - '93. 5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 6 :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 '93. 6 : 공포

규제명	수도권 변두리지역내 비도시형공장 일부 증설허용
근거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규제내용 또는 목적	◦ 개발유도권역·자연보전권역·개발유보권역의 도시형업종 공장은 3,000㎡까지 증설이 허용되나,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하여 지방입지가 가능한 비도시형업종 공장은 증설이 금지됨.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국토계획국 수도권계획과 ◦ 절차: 공장설립 인·허가 신청시 시장·군수가 관련법규 저촉여부 검토
규제의 부작용	◦ 비도시형공장의 증설을 일률적으로 규제함에 따라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
개선방안	◦ 비도시형공장 중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공장은 건축연면적 3,000㎡까지 증설허용 ※ 도시형업종 증설허용 규모와 균형 도모
추진일정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93. 4: 개정안 작성 −'93. 5: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93. 6: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93. 6: 공포

규제명	창고·사무실등 공장부속시설 설치규제
근거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창고·사무실은 공장 부속시설로 수도권내 설치를 규제 − 기존공장은 제조시설이외에 창고·사무실을 연면적 500㎡까지 증설 허용 − 신규공장은 창고·사무실면적을 포함하여 전체 공장연면적을 1,000㎡까지만 허용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국토계획국 수도권계획과 ◦ 절차: 공장설립 인·허가 신청시 시장·군수가 관련법규 저촉여부 검토
규제의 부작용	◦ 창고부족으로 제품·원자재를 노천에 야적하여 풍수해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며, 사무실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장부지내 증설이 곤란하여 인근 건물을 임대사용하는 등 기업활동에 애로
개선방안	◦ 창고·사무실은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

추 진 일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4 : 개정안 작성 - '93. 5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93. 6 :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 '93. 6 : 공포
---------	--

규 제 명	수도권내 소규모공단 지정절차 간소화
근 거 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8조의 2 ◦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규 제 내 용 또 는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에 소규모공단(1만8천평) 조성시 3개 절차(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지방공단 지정) 이행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pre> graph LR A["수도권 심의회 심의"] --> B["국토이용계획변경 (경기도지사)"] B --> C["지방공단 지정승인 (건설부장관)"] C --> D["지방공단 지정 (경기도지사)"] </pre> </div>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국토계획국 수도권계획과, 토지이용계획과 토지국 입지계획과
규제의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내 소규모공단 조성시 3개법률에 의한 중복절차에 따라 공단지정 기간이 장기간 소요(6개월 내외)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지정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지방공단 지정절차를 동시진행(제도운영 개선) - 국토이용계획변경등 하위절차는 수도권정비심의회 심의후 조속 처리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정비심의회 심의, 지방공단 지정절차 등 동시진행을 위한 지침 시달 : '93. 3

■ 도 시

규 제 명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에 대한 행위규제
규제근거	도시계획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제 내용 또는 목적	장래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에 대하여는 미리 도시계획으로 그 위치, 규모 등을 결정하고 당해 도로계획선내에서는 영구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주체 : 시장 · 군수 ◦ 규제절차 : 도시기본계획수립→도시계획(재정비)→지적고시→년차별 집행계획수립→사업시행
규제의 부작용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도로를 개설할 때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으로 장기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므로써, 행위제한은 물론 재산권행사마저 제약되어 민원유발
개선방안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 20년이 경과되고 3년이내 집행이 어려운 간선도로를 제외한 집산도로 이하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계획을 해제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파악 : '93. 3. 31 - 개선방안마련 : 4. 30 - 지침시달 : 5. 10 - 도시계획해제(시·군) : '93. 5~12 (현황파악→도시계획(안)수립→도시계획위원회심의→지방의회의 견청취→도시계획해제)

규제명	시화공단 공장용지중 분양대금 완납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규제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준공인가)
규제내용 또는 목적	시화공단 공장용지중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도 준공인가가 되지 않아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음.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주체 : 한국수자원공사 ◦ 시행절차 : 실시계획인가→사업시행→공장용지분양→분양대금 납부→준공인가→소유권이전
규제의 부작용	준공인가가 되지 않아 소유권이전이 늦어져 입주업체가 둥 토지를 담보로 활용할 수 없어 자금난을 겪고 있음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계획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분준공 절차를 취하여 조속 소유권 이전토록 조치 ◦ 장기계획

	공단조성시 분양계획에 맞추어 사업시행구역을 세분화하여 실시계획 수립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실시계획서 작성 : '93. 2 ~ 3 - 실시계획변경 승인 : '93. 4 - 준공인가서 작성 : '93. 5 - 준공인가 : '93. 6 - 지적등기정리 : '93. 7 ~ 8 - 소유권이전 : '93. 9 ◦ 장기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공단조성시는 사업시행구역을 세분화하여 실시계획 수립

규제명	도시공원내 민간이 설치한 공원시설의 무상귀속 규정개선
규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83조제2항 ◦ 도시공원법 제6조제1항
규제내용 또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의 일종인 공공시설 ◦ 민간이 자비로 공원을 설치시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주체 : 관할 시장 · 군수 ◦ 절차 : 관할 시장 · 군수의 실시계획인가 → 사업실시 → 준공검사 → 시장 · 군수에 사업완료 통지(사업자) → 관리청에 귀속
규제의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 지정면적의 약 70%가 사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상 민자유치에 의한 개발이 절실한 실정 ◦ 그러나 공원의 민자개발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개발후 소유권이 관리 청에 무상귀속 되어 참여기피 및 민원유발의 요인으로 작용
개선방안	민간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원시설은 무상귀속의 대상에서 제외도록 도시공원법 개정
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법 개정안 작성 : '9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3 : 안작성 - '93. 5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93. 7 : 경제장관회의 및 법제처 심사 - '93. 9 : 국무회의 및 국회제출

규제명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녹지내 행위제한 완화
규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법 제12조 ◦ 도시공원법시행령 제8조
규제내용 또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녹지내에서는 결정시부터 조성시까지 ◦ 기존건축물 및 공작물의 개축·재축·대수선 및 토지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및 재식·토석의 채취를 규제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주체 : 관할 시장·군수 ◦ 절차 :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녹지를 결정·고시→각종 행위를 제한
규제의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으로 녹지를 결정한후 ◦ 장기간 조성하지 아니한채 각종행위를 규제함으로써 ◦ 해당주민의 생활불편등 민원이 상존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결정후 조성시까지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행위의 허용을 위해 도시공원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 허용사항 : 기존건축물 및 공작물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토지의 형질변경·죽목의 벌채·재식 및 토석의 채취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93. 3 : 도시공원법 개정안 작성 -'93. 5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93. 7 : 경제장관회의 및 법제처 심사 -'93. 9 : 국무회의 및 국회제출

규제명	철도변 원충녹지 설치의무 완화
규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법 제12조 ◦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9조
규제내용 또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변에는 매연·소음·진동등 제반공해의 완화와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 활용되도록 ◦ 일정쪽의 원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주체 : 건설부장관('91. 4. 18 시 · 도지사에 위임) ◦ 절차 : 철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행위의 제한
규제의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내 수송난 해결을 위해 철도시설을 확장코자 도시계획 변경시 ◦ 시가화가 완료되어 주택 및 상가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녹지를 결

	<p>정하므로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재산권 행사제한 및 생활불편 초래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변에 방음벽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 철도법 제76조에 의한 보호지구 및 건축제한지구로 지정 · 관리하는 경우에는 ◦ 완충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시행규칙 개정
추 진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93. 4 : 개정안 작성 -'93. 6 : 입법예고 -'93. 7 : 법제처 심의 및 공포

규 제 명	유원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규 제 근 거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규 제 내 용 또 는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원지안에서는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숙박시설의 일종인 관광호텔의 설치를 허용하고 ◦ 유원지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유원지시설 이외의 일부시설 설치허용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주체 : 건설부장관('91. 4. 18 시 · 도지사에 위임) ◦ 절차 : 유원지내 세부시설에 관한 조성계획 결정→행위의 제한
규 제 의 부 작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원지내에서 관광호텔의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통상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위락시설의 설치를 규제하므로써 운영 및 이용에 지장 ◦ 유원지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한 행위제한이 유사한 기능인 도시공원 보다 엄격하여 형평이 맞지않음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호텔내에서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위락시설의 설치 허용 ◦ 유원지의 조성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의 허용범위를 도시공원 수준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에 따라 기존건축물 및 공작물의 개축 · 재축 및 대수선도 추가 허용
추 진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93. 3 : 개정안 작성 -'93. 5 : 입법예고

	-'93. 6 : 법제처 심의 및 공포
--	-----------------------

규제명	녹지지역내의 취락지구 토지이용도 규제
규제근거	○ 건축법 제47조(건폐율)
규제내용 또는 목적	○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녹지보전을 위하여 건폐율을 20퍼센트 이하로 규정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건설부 도시국 건축계획과 ○ 절차 : 건폐율 위반시 건축허가 불허(시장·군수)
규제의 부작용	○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자연녹지지역내의 취락지구인 경우에도 건축물의 건폐율을 일반 자연녹지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기존건축물의 중·개축등이 불가하여 민원이 누적
개선방안	○ 건축법 개정 -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역에서는 건폐율 한도를 상향조정(20%→40%)
추진일정	-'94. 1 ~ 3 : 안작성 -'94. 4 ~ 6 :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조회 -'94. 7 ~ 9 : 법제처 심사 및 국회상정 -'94. 10 ~ 11 : 공포

규제명	불합리하게 결정된 공원의 현실화
규제근거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제12조
규제내용 또는 목적	○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필수시설 ○ 93년 1월말 현재 전국 도시계획구역내에 7,356개소(782km ²) 결정
규제주체 및 절차	○ 규제주체 : 건설부장관('91. 4. 18 시·도지사에 위임) ○ 절차 : 공원의 위치·면적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행위의 제한
규제의 부작용	○ 주택밀집등으로 인해 공원의 조성이나 기능부활이 불가한 경우 ○ 대책없이 장기간 조성하지 아니한채 각종 행위를 제한하므로써 민원이 상존
개선방안	○ 주로 공원의 경계부에 주택이 밀집되어 조성이 불가한 경우 공원구역에서 제외하여 도시계획 변경결정(각 시·도) - 공원결정후의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발등 외법조치후 양성화

	-국·공유지의 무단점유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청에서 사용료 징수등 의 법조치
추 진 계 획	○ 불합한 공원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 '93. 6 ○ 구역조정후 건설부에 결과보고

■ 수자원

규 제 명	하천수익자부담금 부과 징수
규 제 규 정	○ 하천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
규 제 내 용 또는 목 적	하천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이익을 받은 범위안에서 당해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킴.
규제주체 및 절차	○ 규제주체 : 지방국토관리청장, 시·도지사 ○ 절차 : 하천공사 시행 → 부과대상 결정 → 부과징수
규 제 의 부 작 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및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와 중복되어 국민에게 이중부담이 될 수 있고, 하천공사의 수익자 대부분이 농민으로 사실상 부과가 어렵고, 부과실적도 극히 적음.
개 선 방 안	하천수익자부담금 징수제도를 폐지
추 진 일 정	○ 하천법 개정 : '94 이후

규 제 명	하천예정지안의 행위규제
규 제 규 정	○ 하천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8조
규 제 내 용 또는 목 적	하천공사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에 편입될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고시하면 하천구역과 동일하게 규제되어 토지점용, 공작물설치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규제주체 및 절차	○ 규제주체 : 지방국토관리청장, 시·도지사 ○ 절 차 : 허가신청 → 심 사 → 심사기준에 의거 허가 또는 불허
규 제 의 부 작 용	○ 하천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하천예정지안에서 경작을 하려면 관리청으로부터 토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하천공사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많음.
개 선 방 안	○ 하천구역의 규제 대부분을 하천예정지에서도 준용토록 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고, 공작물설치 등의 하천공사에 지장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허가받도록 하천법에 규정

추 진 일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법 개정 -'93. 3 : 안작성 -'93. 4 ~ 5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93. 8 : 국무회의 심의 -'93. 9 : 국회 제출
---------	---

■ 도 로

규 제 명	도로변휴게소 설치 기준
근 거 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 제50조(접도구역 지정) ◦ 도로법시행령 제27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 도로변휴게소 설치 · 관리지침
규 제 내 용 또 는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간격 : 최소 20km 이상 ◦ 휴식공간 · 주차장 및 종사원 복지시설등의 규모가 크기 못 함 ◦ 도로통행차량과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간이매점을 정비하고 미관을 개선하여 도로의 이용증진에 기여토록 함.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도로국 도로관리과 ◦ 절차 : 도로변휴게소의 설치는 다음절차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함. 예 : 신청(시장 · 군수)→협의(지방청)→허가(도지사)
규 제 의 부 작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식공간, 주차장 및 종사원 복지시설의 규모가 작으며 ◦ 휴게소 배치간격이 20km 이상시에만 허가하여 민원이 발생됨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소 배치간격의 조정(최소 20km이상→10km이상) ◦ 휴게소 주차공간과 시설규모등을 확충함.
추 진 일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휴게소 설치 관리지침 개정 -지침개정 : '93. 3. 5 ◦ 시행 일 : '93. 3. 10

규 제 명	접도구역의 규제 완화
근 거 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 제50조(접도구역 지정) ◦ 도로법시행령 제27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 접도구역 관리지침
규 제 내 용 또 는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도구역(고속국도 제외)의 폭 5m ◦ 접도구역은 장래 도로확장을 위한 공간확보, 구조의 손괴방지, 도로변

	미관의 보존 및 도로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구역안에서는 일정 행위를 제한함.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도로국 도로관리과 ◦ 절차 : 접도구역 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국도의 행위허가 ◦ 지방도] 는 시장·군수가 허가함. ◦ 군도]
규제의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도구역 안의 행위허가를 대폭 완화시는 도로구조의 손괴, 도로교통의 위험등이 초래됨.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접도구역의 폭 5m는 도로구조의 보존 및 통행의 안전상 최소한의 폭이므로 추가 축소조정은 곤란함. ◦ 신고만으로 가능한 행위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m² 이하의 변소, 연면적 50m² 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20m² 이하 축사의 신축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시행령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93. 3 : 관계부처 협의 -'93. 4 : 입법예고 -'94. 5 : 개정 -'93. 6 : 시행

규제명	도로접용의 규제완화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 제40조(도로접용) ◦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접용허가 신청) ◦ 도로접용허가 사무처리규정(훈령)
규제내용 또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구역안의 도로를 접용하고자 하는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도로구역은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는 모든 시설의 보존으로 공공의 교통에 제공하고자 함.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건설부 도로국 도로관리과 ◦ 절차 : 접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허가신청(신청인)→검토(관리청)→허가 및 공고(관리청)
규제의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접용허가 신청시 도로가 교차, 접속구간, 사고많은 지점, 금커브,

	급경사 구간등 교통안전관리상 허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용률의 종류와 점용공사 시행·복구 방법등의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제정시행하여 도로관리의 일관성유지 및 민원해소 ◦ 도로점용료 산정방법의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2(사용료 조정)의 규정에 의한 감면조정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93. 3 : 관계부처 협의 -'93. 4 : 입법예고 -'94. 5 : 개정 -'93. 6 : 시행 ◦ 도로점용허가 사무처리세부지침 제정 시행 : '94 제정

■ 건설기술

규제명	감리전문회사 등록서류간소화
근거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제내용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시와 등록사항변경시 대표자·임원·보유기술자의 이력서, 신원증명서, 자격증사본을 제출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건설부 기술관리실 기술감리담당관 ◦ 절차 : 대표자, 임원, 보유기술자의 제출서류 복잡
규제의부작용	불필요한 대표자·임원의 이력서 및 보유기술자중 고급기술자를 제외한 일반기술자의 이력서, 신원증명서 제출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서류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임원은 신원증명서만 제출 - 보유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만 제출
추진일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93. 4

규제명	증기대여업 및 정비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근거규정	증기관리법 제14조

규제 내용 또는 목적	증기대여업 및 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허가를 받도록 규정(년 1회이상) ※ 시·도지사에 위임 -증기대여업('91. 12. 31) -증기정비업('84. 7. 21)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시·도지사
규제의 부작용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정공고기간내에 시설 및 증기등의 확보가 곤란하고, 프레미엄등의 부작용 발생
개선방안	현행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수시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추진일정	증기관리법 개정 '93. 2. 19 국회건설소위 계류

규제명	증기형식변경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근거규정	증기관리법 제13조
규제 내용 또는 목적	증기를 제작하고자 할 경우 증기의 형식별로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미한 형식의 변경시에도 승인을 받도록 규정
규제주체 및 절차	주체 : 건설부 기술관리관실(건설기계담당관)
규제의 부작용	증기의 성능과 안정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도 승인을 받게 되므로 제작사의 불편초래
개선방안	증기형식변경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추진일정	증기관리법 개정 추진중 '93. 2. 19 국회건설소위 계류

규제명	증기조종사 면허대상 완화
근거규정	증기관리법 제19조
규제 내용 또는 목적	모든 증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시·도지사의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함.
규제주체 및 절차	○ 주체 : 시·도지사 ○ 절차 : 국가기술자격 취득→적성검사 실시→면허증교부

규제의 부작용	증기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괄 규제하고 있어, 조작이 간단한 소형증기를 조종할 경우에도 어려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됨.
개선방안	조작이 간단하고 사고 위험이 적은 소형증기는 국가기술자격 취득대신 교육수료증으로 조종하도록 함. ※ 소형증기 : 4개기종(건설부령으로 정한 계획임) 2톤미만 지게차, 3톤미만 굴삭기·로우더·로울러
추진일정	증기관리법 개정 '93. 2. 19 국회건설소위 계류

규제명	건설부장관의 증기대여요금 결정 근거 삭제
근거규정	증기관리법 제18조
규제내용 또는 목적	증기대여업체의 증기대여요금을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현재 건설부령으로 정한 것은 없으며 대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고 있음)
규제주체 및 절차	주체 : 건설부 건설기계담당관실
규제의 부작용	증기대여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므로써 증기수급 및 건설경기에 따른 자율적·신축적인 증기대여요금 형성곤란
개선방안	동 규정을 삭제함
추진일정	증기관리법 개정 : '93. 2. 19 국회건설소위 계류

규제명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제한 완화
근거규정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시행령 제54조<별표 3>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감리전문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공(기술사4, 고급1, 기사1급10, 기술자10, 계 25명) 2) 전면책임(기술사14, 고급16, 기사1급50, 기술자 40, 계 120)명) ◦ 건축감리전문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공(기술사1, 건축사3, 고급1, 기사1급5, 기술자5, 계 15명) 2) 전면책임(기술사3, 건축사5, 고급5, 기사1급15, 기술자15, 계 43명)
규제주체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건설부 기술관리실 기술감리담당관 ◦ 절차 : 감리전문회사 등록시 규제내용의 인력을 구비해야 함

규제의부작용	공급부족의 현실을 감안할 때 등록인력이 과다함.
개선방안	등록요건중 기술인력기준 조정(기술자의 수등)
추진일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 '93. 7 이후 (건설기술관리법 : '92. 11. 3 국회제출)

주택건설 2백만호 앞당겨진 내집마련